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20 선고 2022가단190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

담당변호사 박봉석(소송구조)

변 론 종 결 2023. 3. 17.

판 결 선 고 2023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갑 제2, 3,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① 원고는 2017. 7. 4. 부산 강서구 C 임야 156,574㎡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위 임야는 2020. 6. 15. C 임야 155,335㎡와 D 임야 1,239㎡로 분할되었다.

② 피고는 2020. 8. 28. D 임야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D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율

별지